**【첨부2】**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보안관리 약정서**

본 약정(이하 “본 약정”)은 2024년 월 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에 본점을 둔 신한금융플러스 (도급인, 이하 “위탁자”라 한다)

(2) 에 본점을 둔 (수급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이하 “원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이하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가 "원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는 "원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본건 개인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본건 개인정보를 "원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본건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본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본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정하여 그 명단과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및 열람·처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명단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포함)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호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반납)**

수탁자는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본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필요최소한 기간과 파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기로 한다.

1. 필요최소한 기간 : 제공일로부터 (해당사항없음)
2. 파기계획 : (해당사항없음)

본건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 점검)**

위탁자는 수탁자의 보안관리 상태, 개인정보의 파기의 이행 여부, 교육실시 현황 등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무실,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제3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수탁자로부터 [별첨] 확약서를 수령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위탁자 및 위탁자의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위탁내용 및 수탁자 공개)**

위탁자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기로 한다.

제1항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1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원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8조("원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원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원계약"의 업무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6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희 필 (인)

**[수탁자]**

대표이사 (인)